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27
----------	-----

제출년월일 : 2023. 1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음주 및 주취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상황 노출을 차단하여 지역사회 음주 조장 환경 개선 및 금주 환경 조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인 아동, 청소년의 성장에 미치는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관련 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사회 음주 피해 예방과 절주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금주구역 지정 및 금주구역 운영 등(안 제3조~제4조)

다. 교육 및 홍보(안 제5조)

라.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안 제6조)

마. 과태료(안 제7조)

바.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제8조의4
(금주구역 지정), 제34조(과태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10. 31. ~ 2023. 11. 20.),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2023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2023.12.14.) 심의 결과 - 원안의결

안전번호	심 의 안	심의결과	비 고
제2023-3호	○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안 제3조(금주구역 지정 등) - 안 제7조(과태료)	원안의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3) 부패영향평가 :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없음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전한 음주문화”란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을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 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하고, 금주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 운영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 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 금주 구역에서 지역 축제 및 행사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 문화 및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 구역에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수행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금주 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공포한 날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한다.

관계법령 발취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도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허 현
연락처	(033) 330 - 4880